
202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 기 도
(경 제 실)

목 차

I.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1. 지원계획 총괄	1
2. 운전자금 세부지원계획	2
(1) 일반기업 등 지원	2
1-1. 일반기업	4
1-2. 신기술기업	5
1-3. 벤처창업기업	6
1-4. 여성창업기업	7
1-5.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8
(2) 매출감소기업	9
(3) 경기도형 뉴딜기업	10
(4) 수출형기업	12
(5) 청년혁신 창업기업	13
(6) 소상공인	17
(7) 사회적경제기업	18
3.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세부지원계획	20
(1) 일반기업 등 지원	22
1-1. 일반기업	22
1-1-1. 중소기업육성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23
1-2. 신기술기업	26
1-3. 벤처창업기업	27
1-4. 여성창업기업	28
1-5.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29
(2)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30
2-1.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31
2-2.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32

II. 별첨 자료

[별표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	33
[별표 2]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기준	34
[별표 3] 소재·부품·장비의 범위	40

III.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안내	44
---------------------------	----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총괄)

□ 지원규모 : 2조원(기금 4,000억원 , 협조 1조 6,000억원)

- 운전자금 : 1조 5,000억원(기금 2,000억원, 협조 13,0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5,000억원(기금 2,000억원, 협조 3,000억원)

□ 세부지원계획

구 분	지원규모 (억원)	자금용도	지원한도	용자기간 (거치기간)		
합 계	20,000					
소 계	15,000	운 전 자 금				
일반기업·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3,0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억원	3년(1년)		
매출감소기업	2,000		2억원			
경기도형 뉴딜기업 (디지털·그린·고용뉴딜)	2,000		5억원			
수출형기업	300		2억원	5년(2년)		
청년혁신창업기업	400			4년(1년)		
사회적경제기업	100					
소상공인	4,000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재창업자금	1억원	5년(1년)		
		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이내)	5천만원			
특별경영자금	600	· 희망특례자금(50억원), 재해피해자금(50억원) ·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긴급경영자금(500억원)				
예비자금	2,600	· 회복지원 예비자금				
소 계	5,000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5,000	세부 용도	제조업	비제조업	용자기간 (거치기간)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공장 외 사업장 복지시설, 기숙사	30억원 10억원 3억원	10억원	8년(3년) 3년(1년)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복지시설, 기숙사	30억원 2억원	10억원	8년(3년) 3년(1년)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8년(3년) 3년(1년)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이내)		15억원	10억원	8년(3년)
		연구개발비		5억원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공장 임차 기숙사 임차	5억원 2억원		3년(1년)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3~30억원		3/8/15년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이내)	300억원		8년(3년)
		벤처집적시설건립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건립비 50%이내)	150억원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지원한도 적용)

운전자금 세부지원 계획

1.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 지원개요

- 용자규모 : 3,000억원
- 용자한도 : 업체당 5억원(특별지원 10억원)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은 별도 한도 운용
- 용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용자금리 - 기금용자 : 별도 고지하는 금리 적용
 - 협조용자 : 은행금리 - 이차보전을

1) 은행대출금리에 아래와 같이 누진비율 적용하여 이차보전을 산정

은행 금리	이자지원율	은행금리	이자지원율
~ 1.50%	0.3%	5.01% ~ 5.25%	1.2%
1.51% ~ 2.00%	0.4%	5.26% ~ 5.50%	1.3%
2.01% ~ 2.50%	0.5%	5.51% ~ 5.75%	1.4%
2.51% ~ 3.00%	0.6%	5.76% ~ 6.00%	1.5%
3.01% ~ 3.50%	0.7%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 ~	2.0%

2) 대출금액별 최고 이차보전을 적용

- ① 2억원 이하 2.0%
- ②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
- ③ 10억원 초과 1.0%

3) 추가 금리 및 이차보전 지원

- ① 신기술·벤처창업기업 +0.3%
- ② 여성·장애인·유망중소·일자리우수·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기업 +0.2%

※ 추가이차보전은 중복적용시 0.3%를 초과할 수 없다.

□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가점부여 : 10점 이내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경기북부지역 또는 낙후지역 소재 기업 ※ 우선 지원대상 가점[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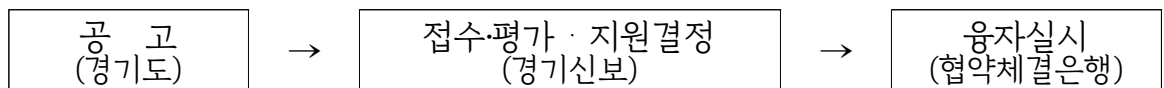
- **특별지원 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국내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 타 시·도에서 경기도내로(신청일 현재 경기도내로 이전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기업) 또는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이전일로부터)에 이전한 기업 이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 기업)
 - 천재지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경기도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 지원 제외기업(주요사유)

- 휴·폐업 중인 기업 ○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주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금융)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업

□ 신청·접수

- 지원체계



- 신청·접수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용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씨티, 광주은행(12개)

1-1. 일반기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1부 ④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⑤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해당서류	①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② 우선·특별지원대상 입증서류, 인증서 사본 등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 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평가완화(60점→50점)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 용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용자은행에 승인 통지

1-2. 신기술기업

□ 지원대상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완료기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부처별 인증 신기술과 특허(실용신안) 받은 기술 중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하는(양산화하려는) 기업
- 소재·부품 전문 확인기업(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녹색인증기업
-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로 대학졸업 후 3년 이내인 자(예정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경기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설립 후 3년 이내의 업체

□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1부 ④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⑤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해당서류	① 기술개발협약서(기술협력사업) 또는 특허(실용신안) 기술지정서 ②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기술개발능력, 사업타당성,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1-3. 벤처창업기업

□ 지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기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술(제품)을 직접 또는 이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 경기도에서 조성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②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1부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벤처기업확인서 1부 ⑤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⑥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해당서류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조직인력 인프라, 기술성, 사업타당성,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1-4. 여성창업기업

□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1부 ④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⑤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해당서류	① 여성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② 우선·특별지원대상 입증서류, 인증서 사본 등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 용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용자은행에 승인 통지

1-5.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 ※ 소재부품의 범위 : 용자지침 「별표 2-4」

□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②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1부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⑤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해당서류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 용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용자은행에 승인 통지

2. 매출감소기업

□ 지원개요

- 용자규모 : 2,000억원 (협조용자)
- 용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기존한도와 별도)
- 용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용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1.5%)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
 - ‘19년 창업기업의 경우 부가세과세표준확인서 등을 통해 ‘19년의 매출액을 연간 환산하여 산정
 - ‘20년 결산 이전인 기업의 경우 부가세과세표준확인서 등을 통해 ‘20년의 매출액을 연간 환산하여 산정

□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②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1부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⑤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해당서류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 용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용자은행에 승인 통지
- 용자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은행

3. 경기도형 뉴딜기업

□ 지원개요

- 용자규모 : 2,000억원 (기금융자 1,000억원, 협조용자 1,000억원)
- 용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 용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용자금리
 - 고용뉴딜기업 : (기금융자) 1.5%(고정)
 - 디지털뉴딜·그린뉴딜기업 : (협조용자)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1.5%)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경기도형 뉴딜기업(고용·디지털·그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구 분	지원요건	지원한도
고 용 뉴딜기업	‘20년 말 대비 접수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유지 또는 확대한 기업 (단, 1년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를 유지 또는 확대할 것을 약속한 기업)	업체당 2억원 이내 (기존한도 별도)
디 지 털 뉴딜기업	① 사업장 스마트화 기업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기업, ICT 관련 시스템 또는 설비 도입기업 ② 판매 온라인화 기업 - 경기지역화폐 가맹기업, 마켓경기 또는 경기도 주식회사를 통한 온라인 판매·마케팅 기업 ③ 시스템 디지털화 기업 -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프로그램 서비스업, 보안서비스업 영위기업	업체당 2억원 이내
그 린 뉴딜기업	① 그린인증기업 - 녹색인증기업(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녹색기업 ② 그린에너지 기업 - 에너지효율화기업(에너지절약전문기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기업 ③ 친환경기업 - 친환경제품(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저탄소농축산물, 우수재활용인증) 제조기업,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②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1부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⑤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해당서류	뉴딜기업 지원대상 인증서류 및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① 고용뉴딜기업 : 고용유지확약서 및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중 택1) ② 디지털뉴딜기업 : 협약서·확인서·계약서 등 지원요건 증빙서류 ③ 그린뉴딜기업 : 인증서·등록증·지정서 등 지원요건 증빙서류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 용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용자은행에 승인 통지

○ 용자취급은행

- 고용뉴딜기업 : (기금융자)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은행
- 디지털뉴딜·그린뉴딜기업 : (협조용자) 협약체결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씨티, 광주은행(12개)

4. 수출형기업

□ 지원개요

- 용자규모 : 300억원 (기금용자)
- 용자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 용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용자금리 : 2.0%(고정)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1년 이내의 수출실적보유기업
 - 수출신용장 보유 기업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소지기업
 - 수출실적 증명서상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영세율 매출계산서 발급기업

□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②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1부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⑤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해당서류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 용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용자은행에 승인 통지

5. 청년혁신 창업기업

□ 지원개요

- 용자규모 : 400억원 (기금용자)
- 용자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 용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용자금리 : 1.0%(고정)
- 담 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지원대상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 39세 이하인 업력 7년 이내 기업
다만,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만 40세 이상 기업도 지원 가능

구 분	지원요건	지원한도
Track1 (혁신형 창업기업)	①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 포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보유기업 ② 부품소재 전문 확인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확인) ③ 신기술인증(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보유기업 ④ 신제품인증(NEP, 국가기술표준연구원 확인) 보유기업 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⑥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정부, 도, 또는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주관한 창업경진 대회 입상기업 ※ 단, ①~⑤의 경우, 만40세 이상 기업도 지원가능	업체당 5억원 이내
Track2 (벤처형 창업기업)	①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 경기도 내 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 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지원기관 입주기업 ② 도 주관 창업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기업 ③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 성장동력기업 : 성장동력기업지원업종* 영위기업 또는 전년대비 매출액 20% 이상 증가기업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뿌리산업 (용자지침 별표 2-1, 2-2) - 일자리창출기업 : 최근 1년간 신규고용창출기업 (기존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한함)	업체당 3억원 이내

□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신청서 1부
해당서류	지원대상 입증서류, 각종 인증서 사본 등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 및 한도생략

※ 용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용자은행에 승인 통지

○ 용자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은행

6. 소상공인

□ 지원개요

- 용자규모 : 4,000억원
- 용자한도 :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원
- 용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1.7% ~ 2.0%)
- 담 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지원내용 및 기준

구 분	지원범위	지원한도	상환기간
점포임차자금	소요금액 90%범위이내	5천만원	5년 (1년거치 4년균분)
창업자금	소요금액 범위이내	1억원	
재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교육인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또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수료한 자
- ※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온라인교육을 인정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자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거주지 부동산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권리침해 중인 경우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있는 창업자금 신청 소상공인(재창업자금 제외)
-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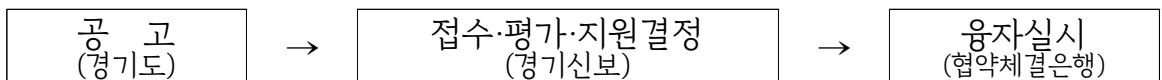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관련하여 자금 또는 점포지원을 받고 있는 자(재창업자금 제외)
 -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보조금 형식의 무상지원(반대급부 없는)하는 경우에 한함(보증지원, 기관 또는 센터 입주(임차료有)지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사업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재창업자금 제외)

□ 창업경영교육 인정기관

-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직접시설,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 중 도의 교육기관인증을 받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지원체계



-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소상공인지원 자금 신청서 ② 신용보증 신청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⑤ 창업경영교육 및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증빙서류 ⑥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해당서류	① 사업장 임차계약서 1부(점포임차자금에 한함) ② 임대차 및 권리내용 확인서(자가사업장이 아닌 경우) ③ 금융거래확인서 1부 ④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 지원결정 : 신청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 평가 후 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 용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용자은행에 승인 통지
- 용자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은행

□ 상담 및 문의

- 자금지원 및 보증서 발급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5900)
- 교육관련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031)303-1606~9
 -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2)

7.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개요

- 용자규모 : 100억원
- 용자한도 : 업체당 2억원이내
- 용자기간 : 4년(1년거치 3년균분상환)
- 용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5%)
- 담 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장이 경기도내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경기형 또는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2019.3.13.이후 지정기업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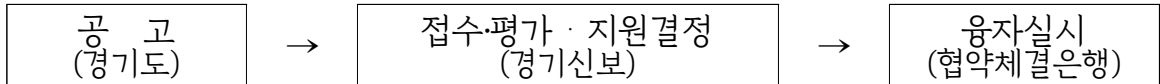
□ 지원제외 대상

- 휴 · 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 주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중인 기업

- 협동조합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조합
- 지원결정 후 대출이 진행 중이거나, 용자취급 기한 내에 동일상품을 재신청하는 기업 등

□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지원체계



-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류 1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인증서,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협동조합설립인가증, (예비)마을기업 지정서, 생활협동조합 인가증 등 ④ 금융거래확인서 1부 ⑤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해당서류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지원결정 : 신청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 평가 후 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 용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용자은행에 승인 통지
- 용자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은행

□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1577-5900)
- 경기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417)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세부지원 계획

□ 지원개요

- 용자규모 : 5,000억원
- 용자한도 :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은 별도한도 운용
- 용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등
- 용자금리 - 기금용자 : 별도 고지하는 금리 적용
 - 협조용자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1) 은행대출금리에 아래와 같이 누진비율 적용하여 이차보전율 산정

은행 금리	이자지원율	은행금리	이자지원율
~ 1.50%	0.3%	5.01% ~ 5.25%	1.2%
1.51% ~ 2.00%	0.4%	5.26% ~ 5.50%	1.3%
2.01% ~ 2.50%	0.5%	5.51% ~ 5.75%	1.4%
2.51% ~ 3.00%	0.6%	5.76% ~ 6.00%	1.5%
3.01% ~ 3.50%	0.7%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 ~	2.0%

2) 대출금액별 최고 이차보전율 적용

- ① 2억원 이하 2.0%
- ②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
- ③ 10억원 초과 1.0%

3) 추가 금리 및 이차보전 지원

- ① 신기술·벤처창업기업 +0.3%
- ② 여성·장애인·유망중소·일자리우수·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기업 +0.2%

※ 추가이차보전율은 중복적용시 0.3%를 초과할 수 없다.

□ 지원내용 및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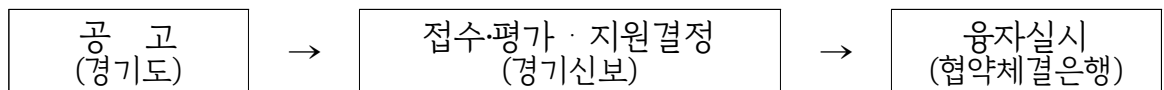
구 분	지원범위	지원한도		상환기간	비 고
		제조업	비제조업		
건축비	건축비의 80%이내	30억원	10억원	8년 (3년거치 5년균분상환)	※복지시설, 기숙사건축비, 매입비, 임차비는 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또는 외국인근로자 2인이상) 기업에 한함
		10억원			
		3억원		3년 (1년거치 2년균분상환)	

구 분		지원범위	지원한도		상환기간	비 고
			제조업	비제조업		
매입비	공장, 창고, 산단부지	매입비의 80%이내	30억원	10억원	8년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산단부지 매입비는 해당 시군에서 부지매입비를 10%이상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복지시설, 기숙사	소요자금 80%이내	2억원		3년 (1년거치 2년균분상환)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비용	소요자금 80%이내	15억원	10억원	8년 (3년거치 5년균분상환)	
	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자금 80%이내	15억원	10억원	8년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임차비	기숙사	임차비의 80%이내	2억원		3년 (1년거치 2년균분상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서 설치·운영기업에 한함
	공장임차		5억원			
연구개발비		소요자금 범위이내	5억원		3 / 8 / 15년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3~30억원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8년 (3년거치 5년균분상환) 3년 (1년거치 2년균분상환)	※시설부대비용은 설비 구입비의 20% 이내에 한함(신기술기업은 최대 50%이내) ※공장 외 사업장 근무 환경 시설개선비 지원 한도 : 3억원
건립사업	지식산업센터	건립비의 75%이내	300억원		8년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융자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벤처집적시설	건립비의 50%이내	150억원			

- ※ 비제조업⇒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제조업지원한도 적용)
- ※ 지식산업센터 입주비용은 공장설립자금 융자잔액이 없는 시설에 한해 지원
- ※ 융자규모는 중소기업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포함

□ 신청·접수

○ 지원체계



- 신청·접수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1.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1-1. 일반기업

□ 지원대상 및 우선·특별지원 대상 : “운전자금-일반기업”과 동일

□ 지원 제외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용자 진행 중이거나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미제출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금융)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업

□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②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1부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⑤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해당서류	① [시설(기계)구입비] 시설구입계약서(또는 견적서등) ② [공장건축, 매입, 임차비] 공장설립승인서, 공장건축허가증, 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통장입금 내역서 ③ [입주비]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④ [연구개발비]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지정확인서 ⑤ [창고, 연구소, 기숙사 매입·임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임대차·매매 계약서(기업명의) ⑥ 우선·특별지원대상 입증서류, 인증서 사본 등 ⑦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 용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 후 업체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용자은행에 승인 통지

1-1-1. 중소기업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 지원내용

구 분	세부사업	지원한도	융자기간	비 고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운전자금	3억원	3년 (1년거치 2년균분상환)	※원자재,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중소유통기업,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전문상가 건립 및 시설개선	10억원	8년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시장정비사업	임시시장설치	5억원	8년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시장재개발·재건축	30억원	15년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시군출연 30%

□ 지원대상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자 및 운영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 건립자

【시장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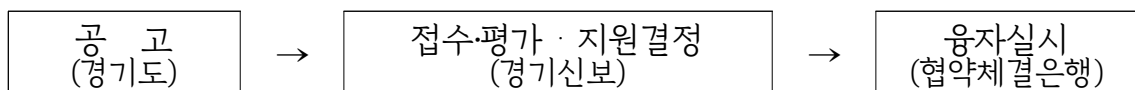
- 시장정비사업자(기존시장을 철거하여 재건축·재개발하는 사업자, 시장시설 개·보수,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 포함)

□ 지원 제외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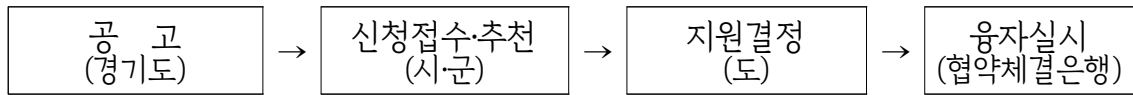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에 따른 운전자금 세부지원계획중 제1장 지원제외기업 규정 준용

□ 지원체계

- 중소기업 시설개선사업



○ 시장정비사업



※ 시장정비사업은 기존절차 유지

□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 신청·접수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운전자금)
 - 용자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1년이내),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평가항목 : 경영상황, 사업계획, 경영자신뢰도, 정책우대사항
 - 지원결정 : 평가결과 40점 이상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 용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1년(운전자금 6개월) 이내

【시장정비사업】

- 신청·접수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시·군(지역경제 담당부서)
- 평가 및 추천 : 시·군
 - 평가항목 : 재무상황, 시장재개발 추진도, 시장현황 및 입지여건, 시장재개발 추진효과
 - 평가결과 추천 : 평가결과 50점 이상업체를 추천
- 지원대상 업체 선정 및 통보 : 도
 - 지원결정 : 추천업체에 대하여 적정평가 여부를 확인 후 결정
 - 지원결정통보 : 도 → 시·군 → 개별업체
 - ※ 용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 변경사항 처리 및 사후관리

○ 중소기업 시설개선사업

- 경기신보 영업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용자은행에 승인 통지
- 변경사항 처리 시 경기도와 기금관리은행, 대출은행에 통보

○ 시장정비사업

- 시장정비사업은 시군에서 변경승인(신고) 요청서 접수 후 도에 제출처리

○ 사후관리 및 용자승인 취소와 관련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지침의 규정 준용

※ 기타 위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자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1577-5900)

○ 경기도 소상공인과(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031-8030-2983, 시장정비사업 (031-8030-2854)

1-2. 신기술기업

□ 지원대상, 우선·특별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 : “운전자금-신기술 기업”과 동일

□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②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1부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⑤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해당서류	① [시설(기계)구입비] 시설구입계약서(또는 견적서등) ② [공장건축, 매입, 임차비] 공장설립승인서, 공장건축허가증, 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통장입금 내역서 ③ [입주비]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④ [연구개발비]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지정확인서 ⑤ [창고, 연구소, 기숙사 매입·임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임대차·매매 계약서(기업명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입일 경우) ⑥ 기술개발협약서(기술협력사업) 또는 특허(실용신안) 기술지정서 ⑦ 특허기술정보센터 선행 기술조사 결과 ⑧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기술개발능력, 사업타당성,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1-3. 벤처창업기업

□ 지원대상, 우선·특별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 : “운전자금-벤처창업기업”과 동일

□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②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1부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⑤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해당서류	① [시설(기계)구입비] 시설구입계약서(또는 견적서등) ② [공장건축, 매입, 임차비] 공장설립승인서, 공장건축허가증, 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통장입금 내역서 ③ [입주비]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④ [연구개발비]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지정확인서 ⑤ [창고, 연구소, 기숙사 매입·임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임대차·매매계약서(기업명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입일 경우) ⑥ 우선·특별지원대상 입증서류, 인증서 사본 등 ⑦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1-4. 여성창업기업

□ 지원대상, 지원제외 대상 : “운전자금-여성창업기업”과 동일

□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②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1부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⑤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해당서류	① [시설(기계)구입비] 시설구입계약서(또는 견적서등) ② [공장건축, 매입, 임차비] 공장설립승인서, 공장건축허가증, 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통장입금 내역서 ③ [입주비]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④ [연구개발비]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지정확인서 ⑤ [창고, 연구소, 기숙사 매입·임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임대차·매매계약서(기업명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입일 경우) ⑥ 우선·특별지원대상 입증서류, 인증서 사본 등 ⑦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 용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1-5.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 ※ 소재부품의 범위 : 용자지침 「별표 2-4」

□ 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②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1부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⑤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해당서류	① [시설(기계)구입비] 시설구입계약서(또는 견적서등) ②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 용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 지원개요

- 용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용자금리 : (협조용자) 은행금리 - 이차보전을

1) 은행대출금리에 아래와 같이 누진비율 적용하여 이차보전을 산정

은행 금리	이자지원율	은행금리	이자지원율
~ 1.50%	0.3%	5.01% ~ 5.25%	1.2%
1.51% ~ 2.00%	0.4%	5.26% ~ 5.50%	1.3%
2.01% ~ 2.50%	0.5%	5.51% ~ 5.75%	1.4%
2.51% ~ 3.00%	0.6%	5.76% ~ 6.00%	1.5%
3.01% ~ 3.50%	0.7%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 ~	2.0%

2) 대출금액별 최고 이차보전을 적용

- ① 2억원 이하 2.0%
- ②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
- ③ 10억원 초과 1.0%

3) 추가 금리 및 이차보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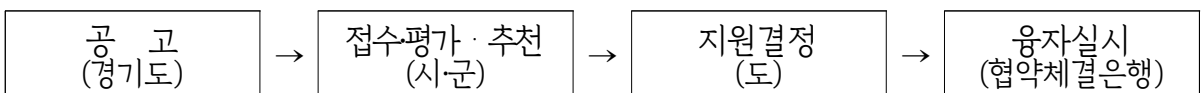
- ① 신기술·벤처창업기업 +0.3%
- ② 여성·장애인·유망중소·일자리우수·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기업 +0.2%

※ 추가이차보전은 중복적용시 0.3%를 초과할 수 없다.

○ 지원내용 및 기준

구 분	지원범위	지원한도	상환기간	비 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	건립자금의 75%이내	300억원	8년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용자취급기한: 결 정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집적시설 건립자금	건립자금의 50%이내	150억원		

○ 지원체계



2-1.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 지원대상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 ※ 용자금액의 5~10%(시군별 차등)를 당해 시군에서 의무 출연해야 지원가능

□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 시·군 지역경제담당과
 -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서 사본 1부 ③ 건축허가서 사본 1부 ④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1부 ⑤ 법인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자가 소유인 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 : 평가결과 일정 평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
 - 결정통보 : 도 → 시·군 → 개별업체
 - ※ 용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 상담 및 문의

- 시·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장설립 담당부서
- 경기도 산업정책과(031-8030-3063)

2-2.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 지원대상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과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지방자치단체(출연, 출자기관 포함), 협회·단체 포함)
 - 단, 민간사업자의 경우 관련기업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입주예정기업 협약서 제출 적극 유도
 - ※ 용자금액의 10~20%(시군별 차등)를 당해 시군에서 의무 출연해야 지원가능

□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용자 진행 중이거나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미제출 기업

□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 시·군 기업지원담당과
 -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 사본 1부 ③ 건축허가서 사본 1부 ④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1부 ⑤ 법인등기부사향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자가 소유인 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 : 평가결과 일정 평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
 - 결정통보 : 도 → 시·군, 개별업체
 - ※ 용자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 상담 및 문의

- 시·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업지원(지역경제) 담당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7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앞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7中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2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홍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86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보건업(86) 영위기업도 육성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기준

□ 우선지원업종 : 조례에 의한 육성산업 영위 기업 <개정 2018.01.01.>

가 점 내 용		
항 목	근거(법령, 지침, 계획)	가점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산업혁명 관련업종 영위기업(별표2-1)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10점
뿌리산업 영위기업(별표2-2)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10점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별표2-3)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10점

□ 우수중소기업 : 정부·道 주관 인증 및 수상기업

가 점 내 용		
항 목	근거(법령, 지침, 계획)	가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선정 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10점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노사협력 우수기업 G-노사상생우수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노동부), 경기도노사상생우수기업선정계획(경기도)	5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신청일 현재 5년 이내, 졸업기업 제외)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5점
경기도 착한기업상 수상 기업(수상일로부터 1년 이내)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	5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업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제11조, 고용노동부선정계획	5점
최근 3년 이내 전국품질분임조 경영대회 수상 기업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산업표준화법 제31조4의 제2항	5점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업체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GGWP) 인증 사업	5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법률 제15조	5점
녹색인증기업(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내)	자연소속색상장기분법 제32조, 시행령 제19조	5점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유망중소기업가점 중복적용불가)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계획	5점
경기도 향토기업(신청일 현재 인증기간 내) (유망중소기업가점 중복적용불가)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5점
경기국제보트쇼 올해의 제품상 수상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이내)	경기국제보트쇼 올해의 제품상 수상	5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너지관리공단 지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5점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특허청 인증	5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5점
농어촌사회공헌인증 기업	농림수산식품부 인증	5점
명문장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5점
NEP, NET, GR, 100PPM, 민속공예품 품질인증, ES, ISO9000/14000인증기업 ·1개 : 2점, 2개 : 4점, 3개 이상 : 6점	경기도의 기술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식 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11조)	6점~2점
경기공예품대전 수상기업 : 대상 5점, 금상 4점, 은상·동상 3점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수상기업 - 장민상 이상 5점 중소벤처기업부장민상 4점 주안민장상 3점 장려상 3점	경기공예품대전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수상후 3년 이내)	5점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2점

□ 기타우대기업 : 법률 및 정책상 우대기업

가 점 내 용		
항 목	근거(법령, 지침, 계획)	가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10점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에정기업(당해 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 및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0점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	10점
사업장이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 및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5점
기업체 본사를 경기도내로 이전완료한 기업 및 이전에정기업(당해 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	5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을 활용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업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5점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VA)업체 ※ V·A : Voluntary Agreement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	5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개인기업의 여성/남성 대표가 동수인 경우에도 우대가능 ※ 여성창업기업자금으로 평가시 여성기업 가점 제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자금지원 우대)	5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자금지원 우대)	5점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단, 상시근로자의 2.9%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5점
성과공유제혁신추진본부로부터 성과 확인을 받은 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5점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기업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 기금 활성화	5점
제조물 책임(PL)법 관련 대응체제 구축기업	제조물책임법 제3조	5점
슈퍼맨 창조 오디션 결선진출기업(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슈퍼맨 창조 오디션 개최 및 결과보고	5점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선정사업	5점
경기도 창업지원사업 수료기업(수료 후 3년 이내)	경기도 창업지원계획	5점
해외마케팅 인재 교육기업(수료 후 1년 이내)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사업	5점
기술력 인정, 기술개발 및 사업화 주력 중소기업		
-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 참여기업	경기도의 기술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식재산 활용 제품 생산 촉진(과학기술진흥조례 제11조)	5점
- 특허·실용신안 취득기술 활용제품 생산기업		5점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수출비중에 따라 차등배점(총매출액의 50%이상 : 5점, 30%이상 : 3점, 20%이상 : 2점)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5점~2점
중소기업 공동작업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 신청기업(당해연도)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업 발굴계획(보육정책과)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5점
채용면접자에 대한 면접수당 지급기업	면접수당지급기업 확대계획(일자리경제정책과)	3점
최근 3년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감사 대상기업은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운용계획상 지원대상	3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소기업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2조의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3점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8항	3점
경기경제자유구역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기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3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소재한 기업 ·100%이상 : 3점, 90%이상 : 2점, 80%이상 : 1점 ※ 실 출연금(도+재단)/직전연도 요구 출연금(도+재단) × 100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기금의조성),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3조제2항	3점~1점

* 경기북부지역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총 10개)
 * 경기도낙후지역 : 연천, 가평, 포천, 동두천, 양평, 여주 (총 6개)
 * 각 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품목코드	산업명	품목코드	산업명
로봇산업		영상·정보기술(IT)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63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29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 장비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29280	산업용 로봇제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9299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고령친화산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지문 및 구축 서비스업
10743	장류제조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서비스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63112	자료처리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26410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차세대자동차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271	의료용기기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제조업
87111	노인 요양복지시설 운영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87112	노인 양로복지시설 운영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96993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반도체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7213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30399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나노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7213	물질검사, 측정및분석기구 제조업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13994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5113	육상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품목코드	산업명	품목코드	산업명
27213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1210	완제의약품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관광레저산업	
디스플레이산업		31111	강선 건조업
26211	액정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전시컨벤션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75992	전시 및 행사대행업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90191	공연기획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9141	구름 베어링 제조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91231	낙시장 운영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섬유산업, 가구산업		75210	여행사업
13	섬유제품제조업	75212	국내 여행사업
32	가구제조업	55101	호텔업
항만물류산업			
50130	기타 해상 운송업		
50201	내륙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50202	항만내 여객운송업		
50209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52101	일반 창고업		
52102	냉장 및 냉장 창고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52991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제약산업			
21101	의약품 회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뿌리산업

□ 뿌리산업기업 : 뿌리기술 활용 업종 및 관련장비 제조업종 영위 기업

품목코드	산업명	품목코드	산업명
주조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압형 제품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9224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용접접합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야금용 기계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금형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59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열처리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표면처리산업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5922	도금업	3012	자동차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소성가공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업종은 제외한다.

문화콘텐츠산업

□ 문화콘텐츠산업기업 :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 업종 영위 기업

구 분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출판·인쇄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게 임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음 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광고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작성업
	71399	그외 기타 광고업
	캐 릭 터	73201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예술·공연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1	공연 예술가
	90132	비공연 예술가
	90191	공연 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소재 · 부품 · 장비의 범위

□ 소재·부품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1

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소재 · 부품)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3)	섬유방적사(면, 모, 화학섬유, 연사 및 가공사, 기타 방적사) 섬유직물(면, 모, 화학섬유,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편조 원단 솜 및 실 염색 가공품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염 색한 것은 제외한다) 날염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날염한 것은 제외한다)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품 부직포 및 펠트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표면처리 및 적층직물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위생용은 제외한다)	1310 1321 13300 13401 13402 13403 13409 13992 13993 13994 13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위생용 원지 기타 종이 및 판지	17122 17125 17129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산업용 가스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핵연료 가공품은 제외한다)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가정용 제품은 제외한다)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가정용 제품은 제외한다)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그림물감은 제외한다) 계면활성제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접착제 및 젤라틴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화학섬유(합성섬유, 재생섬유)	20111 20119 20121 20129 20131 20132 20201 20202 20203 20321 20322 20411 20413 20421 20491 20493 20499 205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생물학적 제제	21101 2110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타이어 및 튜브 고무 패킹류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그 외 기타 고무제품(고무매트, 고무보트, 기타 고무제품은 제외한다)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시트 및 판 플라스틱 합성피혁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22111 22191 22192 22199 22211 22212 22213 22214 22241 2224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주방용품, 가구용 제품, 헬멧, 사무 및 문구용품, 기타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	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판유리 안전유리 기타 판유리 가공품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정형 내화 요업제품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세면기, 변기, 욕조, 기타 위생도기제품은 제외한다) 석회 및 플라스터(플라스터는 제외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연마재 비금속광물 분쇄물 암면 및 유사 제품 탄소섬유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23111 23112 23119 23121 23122 23129 23211 23212 23222 23312 23991 23992 23993 23994 23995 23999
제1차 금속 제조업(24)	합금철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철강선 주철관, 강관,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그 외 기타 1차 철강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우라늄은 제외한다)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 주조제품(희주철은 제외한다) 비철금속 주조제품	24113 24121 24122 24123 2413 24191 24199 2421 2422 2431 243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무기 및 총포탄 부품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가정용 압형제품은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 톱 및 호환성공구 볼트 및 너트류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 스프링 금속선 가공제품(와이어로프에 한정한다) 피복 및 충전 용접봉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의 부품	25121 25122 25123 25130 25200 2591 2592 25934 25941 25942 25943 25944 25995 2599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반도체 기타 전자부품 기억장치,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프린터, 기타 주변기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 프린터의 완제품은 제외한다)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부품	261 262 2632 264 26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의료용 기기 부품(의료용 가구는 제외한다)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도안 및 제도기구는 제외한다)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광학 기기 부품 시계 및 시계 부품(시계 부품에 한정한다)	271 272 27301 27302 27309 27400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전기공급, 전기제어장치 일차전지 축전지 광섬유 케이블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전구 및 램프 부품 조명장치 부품 주방용 전기 기기 부품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부품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부품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부품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교통 신호장치 부품 그 외 기타 전기장비 부품	281 28201 28202 28301 28302 28303 28410 2842 28511 28512 28519 28520 28901 28902 28903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내연기관 및 터빈 유압기기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부품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승강기, 컨베이어 등 물품 취급장비 부품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부품 공기조화장치 부품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 기체 여과기 액체 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사무용 기계 및 장비 부품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부품 가공공작기계 부품 및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2911 29120 2913 29133 2914 29150 2916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80 2919 29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부품(동력 전달장치, 전기 및 제동장치는 완제품을 포함한다)	30110 30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선박 구성부분품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 장치물 부품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전투용 차량 부품 모터사이클 부품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부품	31114 31202 313 31910 31920 31991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응용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1 58222

*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재·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

□ 장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1

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장비)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27212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27213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7216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27219
	기타 광학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27309
전기장비 제조업(28)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은 제외한다)	29150
	승강기(부품은 제외한다)	29162
	컨베이어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9163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169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171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917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은 제외한다)	29192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199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1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2
	금속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3
	금속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4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9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30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242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50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61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69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71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72
	산업용 로봇(부품은 제외한다)	29280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은 제외한다)	29292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93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99	

*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한정한다.

* 장비 관련 부품은 장비범위가 아닌 소재·부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지점명	주소	연락처	팩스번호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	
남부기술평가센터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6층	546-6772	546-6784
중부기술평가센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17 3층	468-1610	468-1611
북부기술평가센터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7 11층	853-9850	853-9848
고양지점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1442, 신한은행 5층	968-7744	968-0020
광명지점	광명시 철산로 36 양정타워 9층 02호	02)2684-6091	02)2684-6098
광주지점	광주시 파발로 212 3층	767-7100	767-4100
구리지점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 농수산물도매시장 B동 330호	554-3706	554-3720
김포지점	김포시 김포대로 851 6층 601호	997-1278	997-1283
군포지점 (군포, 의왕)	군포시 고산로 166 SK벤티움 102동 1205호	477-8214	477-8219
남양주지점 (남양주, 가평)	남양주시 경춘로 1350번길 35 5층 502호	559-8160	559-8166
동탄지점	화성시 동탄반석로 130 1001호, 1002호	613-8777	613-8144
부천시점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204동 302호(부천테크노파크)	032)328-7130	032)328-7409
성남지점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 3층	709-77337	703-9944
수원지점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05 4층 401호	888-5451	888-5466
시흥지점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2층	434-8797	434-8798
안산지점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7 3층(신한은행)	482-8401	482-8412
안성지점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9~213호	675-7133	675-7134
안양지점 (안양, 과천)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17 3층	387-3525	387-3678
양주시점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3층	850-3803	850-3820
오산지점	오산시 성호대로 124 오산신협 3층	372-5360	372-5330
용인지점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A동 8층	285-8687	285-8610
의정부지점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7 3층	826-9092	826-9086
이천시점 (이천, 여주, 양평)	이천시 이섭대천로 1241우리는행빌딩 4층	635-2514	635-8796
파주시점	파주시 문화로 98 NH농협은행 파주시지부 3층	942-7521	942-7568
평택지점	평택시 중앙로 37 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 3층	653-8555	653-8556
포천시점 (포천, 연천)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8층	543-1737	543-1739
하남지점	하남시 검단산로 239 하남시벤처센터 1층	795-4036	795-4038
화성지점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 4층	366-8070	366-8076